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7 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김한규·진선미·김태년

최기상 • 박희승 • 박정현

강훈식 • 박상혁 • 강준현

위성곤 • 장철민 • 이건태

민병덕 • 이원택 • 이재정

강선우 · 서미화 · 장종태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 수요·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·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3항·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신·재생에너지의 수요·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공 개하고, 그 잠정치를 분석·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범위, 분석, 검증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द्	<u> </u>	행			개 정 안
제25조(관련	통계의	작성	등)	1	제25조(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
• ② (생	략)			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
					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
					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잠정치
					를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공개
					하고, 그 잠정치를 분석ㆍ검증
					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
					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				④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
					범위, 분석, 검증 및 공개 등에
				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				<u>정한다.</u>